# 특 허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1허6559 등록무효(특)

원 고 1. A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B

2. C 주식회사

대표이사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리사 전용준, 이동훈

피 고 E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F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영일

변론종결 2023. 3. 23.

판 결 선 고 2023. 4. 20.

주 문

-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2021. 11. 18. 2020당104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호증)

- 1) 발명의 명칭: 변화 능직을 이용한 금속재 방범망
-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1. 8. 19./ 2013. 1. 23./ 제1227418호
- 3)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원고 A 주식회사/ 원고 C 주식회사
- 4) 청구범위

## 가) 등록된 청구범위

【청구항 1】 가로 금속사와 세로 금속사를 직각으로 엇갈려 교차시켜 직조하여서 된 금속재 방범망에 있어서, 가로 금속사와 세로 금속사가 교차하는 간격을 두올 이상건너 상, 하로 교차되도록 하는 조직점이 형성되도록 직조하여 조직점이 사선 방향으로 배열되도록 하여서 됨을 특징으로 하는 변화능직을 이용한 금속재 방범망(이하 '이사건 제1항 특허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가로 금속사와 세로 금속사를 직각으로 엇갈려 교차시켜 직조하여서 된 금속재 방범망에 있어서, 가로 금속사와 세로 금속사가 교차하는 간격을 두올 이상 건너 상, 하로 교차되도록 하는 조직점이 사선상으로 형성되도록 설정한 폭으로 직조함과 아울러 재차 설정한 폭으로 되도록 가로 금속사와 세로 금속사를 두올 이상 건너상, 하로 교차되도록 하는 조직점을 형성하되 상기 설정한 폭으로 기 직조된 조직점들과 중심선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는 사선상으로 되도록 직조함을 특징으로 하는 변화능직을 이용한 금속재 방범망.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사선으로 배치되는 설정한 폭의 조직점이 다른 설정한 폭의 조직점들과 중심선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도록 주기적으로 연속 변화하여 산형으로 됨을 특징으로 하는 변화능직을 이용한 금속재 방범망.

나) 2020. 11. 16.자 정정청구에 의한 청구범위(밑줄 친 부분이 정정청구에 의하여 추가된 부분이다)

【청구항 1】 가로 금속사와 세로 금속사를 직각으로 엇갈려 교차시켜 직조하여서 된 금속재 방범망에 있어서, 가로 금속사와 세로 금속사가 교차하는 간격을 두올 이상 건너 상, 하로 교차되도록 하는 조직점이 형성되도록 직조하여 조직점이 사선 방향으로 배열되도록 하여서 되고, 금속재 방범망은 도구로 가로 금속사 및 세로 금속사로 직조한 망체를 찌르고 긋는 경우에 도구로 긋는 방향과 불일치하는 방향으로 응력이 분포되어 도구의 진행방향이 꺾이게 함을 특징으로 하는 변화능직을 이용한 금속재 방범망.

【청구항 2】 가로 금속사와 세로 금속사를 직각으로 엇갈려 교차시켜 직조하여서 된 금속재 방범망에 있어서, 가로 금속사와 세로 금속사가 교차하는 간격을 두올 이상 건너 상, 하로 교차되도록 하는 조직점이 사선상으로 형성되도록 설정한 폭으로 직조 함과 아울러 재차 설정한 폭으로 되도록 가로 금속사와 세로 금속사를 두올 이상 건너 상, 하로 교차되도록 하는 조직점을 형성하되 상기 설정한 폭으로 기 직조된 조직점들 과 중심선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는 사선상으로 되도록 직조하고, 금속재 방범망은 도 구로 가로 금속사 및 세로 금속사로 직조한 망체를 찌르고 긋는 경우에 도구로 긋는 방향과 불일치하는 방향으로 응력이 분포되어 도구의 진행방향이 꺾이게 함을 특징으로 하는 변화능직을 이용한 금속재 방범망.

【청구항 3】 (정정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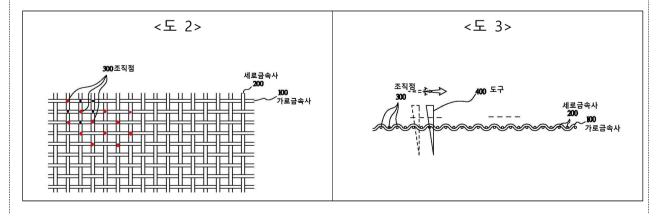
## 5) 주요내용과 도면

#### 개 기술분야

【0001】본 발명은 각종의 업소나 주택 등에서 주로 창(窓)에 적용하여 방범창과 방충망의 기능을 겸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속재 방범망에 관한 것으로, 특히 변화능직에 의하여 금속사로 직조하여서 된 변화능직을 이용한 금속재 방범망에 관한 것이다.

#### 때 종래기술 및 문제점

【0015】즉, 종래의 방범망의 경우 도 2와 도 3으로 보인 바와 같이 가로 금속사(100)와 세로 금속사(200)가 연속 교차하면서 균등하게 배열된 많은 조직점(300)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나, 본 발명의 경우에는 도 4와 도 5로 보인 바와 같이 가로 금속사(100)와 세로 금속사(200)가 교차하되, 2올씩 건너 뛰면서 연속적으로 상, 하 위치가 반전되는 형태로 교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직이 성글게 되고, 연속하여 상, 하 위치가 반전되는 2올씩의조직점(300)이 형성된 것이다.



【0016】이에 따라, 도 3으로 보인 바와 같이, 종래에는 도검 등의 도구(400)를 밀어 넣고 균등 배열되어 응력이 균등하게 배포된 상태에서 방범망을 파손할 수 있는 강제력으로 밀어 주면 도 6으로 보인 바와 같이 조직점(300) 사이로 통과하면서 방범망이 파손되는 것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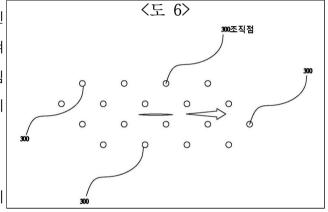
#### 때 발명의 과제

【0007】방범망의 응력이 불균일하게 분포되도록 함으로써, 어느 한 부분에 날카롭고 강한 재질의 도검 등의 도구를 강한 힘으로 밀어 넣고 한도를 초과하는 강한 힘으로 밀더라

도 미는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도구가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도구가 구부러지거나 여러 개의 강선이 밀려나도록 함으로써 절단됨을 방지하도록 한 변화능직을 이용한 금속제방범망을 제공함에 있다.

## **램 발명의 구체적인 내용**

【0008】본 발명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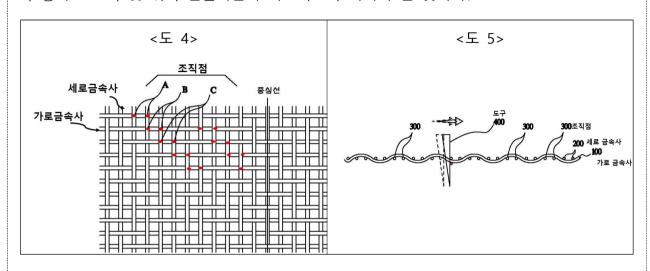


위하여 가로 금속사와 세로 금속사를 이용하여 직조하되, 두올 이상 건너 교차되도록 함으로써 조직점이 사선방향으로 되도록 함과 동시에 일정간격으로 조직점의 사선 방향이 변화되어 외력에 대한 응력 방향이 상이하게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다.

【0009】본 발명에 의하여 직조된 변화능직을 이용한 금속재 방범망은 도검 등으로 금속 망체를 찌르고 긋는 경우에 변화 능직에 의하여 긋는 방향과 불일치하는 사선 방향으로 응력이 분포되어 도검의 진행방향이 꺾이게 되고, 이에 따라 도검에 의한 절단 부위의 크기를 최소화하고 응력 발생 방향이 도검의 진행 방향과 상이하여 도검의 날이 휘게 하거나 부러뜨릴 수 있게 되어 침입시도를 저지하고 금속망체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0014】본 발명은 가로 금속사(100)와 세로 금속사(200)가 연속으로 교차하면서 상, 하위치가 반전되도록 직조하여 연속적으로 균등하게 배열된 조직점(300)을 형성하여서 된 도 3으로 보인 종래의 방범망과는 달리 가로 금속사(100)와 세로 금속사(200)가 두 가닥 건

너 상하로 교차 및 위치 반전하면서 직조되도록 하여서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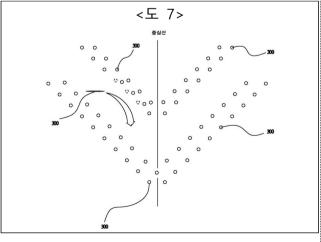
【0015】본 발명의 경우에는 도 4와 도 5로 보인 바와 같이 가로 금속사(100)와 세로 금속사(200)가 교차하되, 2올씩 건너 뛰면서 연속적으로 상, 하 위치가 반전되는 형태로 교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직이 성글게 되고, 연속하여 상, 하 위치가 반전되는 2올씩의조직점(300)이 형성된 것이다.

【0017】본 발명에서는 도 5의 점선으로 보인 바와 같이 도검 등의 도구(400)를 밀어 넣고 강제력으로 밀어 주었을 시 2올씩 건너 뛴 부분에 의하여 가로 금속사(100)나 세로 금속사(200)가 밀려 이동하게 되고, 이러한 부위에서 밀려난 가로 금속사(100)나 세로 금속사(200)가 도 5의 점선 부분에서 실선으로 보인 바와 같이 모이는 것이다.

【0018】이러한 상태에서 더욱 강한 힘으로 도구(400)를 밀게 되면 본 발명은 미는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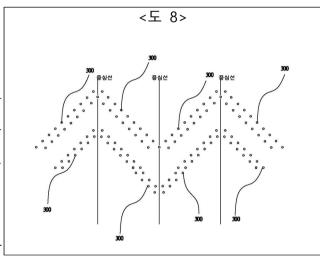
에 따라 더 많은 수의 가로 금속사(100) 또는 세로 금속사(200)가 밀리면서 뭉치게 되는 것이므로, 날카로운 도구(400)라 하더라도 쉽게 자를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0019】본 발명은 이러한 과정에서 도 7의화살표로 보인 바와 같은 2울씩 건너 뛴 부분의 가로 금속사(100)나 세로 금속사(200)가점선 위치에서 실선 위치로 밀려나면서 응력



이 약한 건너 뛴 사선 방향으로 도구(400)의 진행 방향이 변화되는 것이며, 가로 금속사 (100)나 세로 금속사(200)가 밀려나면서 뭉친 방향으로는 진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0022, 23】본 발명은 조직점(300)이 사선 으로 배치되는 폭을 적절히 설정하고, 중심선을 기준으로 조직점(300)의 사선이 대칭이되도록 하되, 도 8로 보인 바와 같이 사선상으로 배치된 조직점(300)들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주기적인 상, 하 반전의 변화를 이루도록 하여 산형으로 되도록 하면 두올씩 건너서 된 조직점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급격하게 방향이 꺾이게 되는 것이나 강제력에 의한



도구(400)는 폭이 있는 것이므로 이같이 급격하게 진행 방향을 꺾지 못하게 되어 강제력에 의한 진행을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0024】이에 따라, 본 발명에 의하여 직조된 변화능직을 이용한 금속재 방범망은 도구 (400)로 금속사로 직조한 망체를 찌르고 긋는 경우에 변화 능직에 의하여 긋는 방향과 불일치하는 방향으로 응력이 분포되어 도구(400)의 진행방향이 꺾이게 되고, 이에 따라 도구 (400)에 의한 절단 피해면적을 최소화하고 응력 발생 방향이 도구(400)의 진행 방향과 상이하여 도구(400)의 날이 휘면서 부러지거나 손상시킬 수 있게 되어 침입시도를 저지하고 금속망체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0025】아울러, 본 발명은 필요에 따라 도 9로 보인 바와 같이 가로 금속사(100)와 세로 금속사(200)가 3올을 건너 뛰어 3회 상, 하로 교차하면서 위치가 반전되어 3개의 조직점 (300)이 형성되도록 직조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도검 등 도구(400)가 강제력을 가한 방향으로 진행됨을 방지할 수 있게 됨은 물론이다.

#### 매 발명의 효과

【0009】본 발명에 의하여 직조된 변화능직을 이용한 금속재 방법망은 도검 등으로 금속 망체를<sup>1)</sup> 찌르고 긋는 경우에 변화 능직에 의하여 긋는 방향과 불일치하는 사선 방향으로 응력이 분포되어 도검의 진행방향이 꺾이게 되고, 이에 따라 도검에 의한 절단 부위의 크 기를 최소화하고 응력 발생 방향이 도검의 진행 방향과 상이하여 도검의 날이 휘게 하거나 부러뜨릴 수 있게 되어 침입시도를 저지하고 금속망체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는 것 이다.

【0010】본 발명은 종래의 방범창과 같이 답답한 느낌을 주지 않음은 물론 도검 등에 의한 금속망체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어 외부인의 무단 침입을 방지하거나 침입시도를 저지할 수 있게 되므로 외부인의 불법 침입으로 인한 범죄 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쾌적한 실내 거주 환경을 제공할 수 있데 되는 유용한 효과가 있다.

#### 나. 선행발명들

### 1) 선행발명 1(갑 제4호증)

선행발명 1은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가 발행한 카탈로그(이하 '이 사건 카탈로그'라 한다)에 게재된 '금속망'에 관한 것으로,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다음과 같다.



<sup>1)</sup> 이 사건 특허발명에 '를'이 빠져 있는 것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 Twilled Weave / 능직

평직과 그 기본 제작법은 같으나 종, 횡선이 매 2가닥씩 수직 교차하여 망목을 형성하는 제작법으로 대개의 경우 제작 밀도(Density)가 높을 경우 널리 사용된다.

#### Herringbone Twilled / 무늬망

본 제작방법은 통상의 능직과 달리 조절 가능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양방향의 대치 망목을 빗살무늬 모양으로 형성하는 특이한 제작방법

## 2) 선행발명 2(갑 제6호증)

2003. 6. 20.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2003-172079호에 게재된 '방충망'에 관한 것으로. 주요내용 및 도면은 다음과 같다.

#### 개 기술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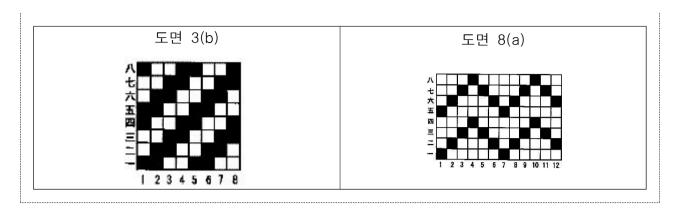
【0001】해충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방 출입구나 창 등의 개구부에 장착되는 망창에 관한 것이다.

#### 때 주요기술내용

【0010】본 발명에서 그물(10)을 구성하는 섬유로서는 폴리에스테르 섬유 또는 폴리에틸렌섬유, 폴리프로필렌섬유, 폴리염화비닐 섬유 등의 각종 합성섬유나 유리섬유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또한 굵기가 300-600데니어의 섬유를 이용할 수 있다.

【0012】본 발명에서 이용하는 평직 조직을 제외한 원조직으로서는 능직 조직 혹은 수자 직 조직을 예시할 수 있다. 능직 조직으로는 도  $2(a)\sim(d)$ 에 나타내는 사문직을 비롯하여, 도 $3(a)\sim3(c)$ 에 나타내는 각종의 것을 예시할 수 있다.

【0016】도 8(a)(b)에 능직 조직의 사문직 조직을 변화시킨 변화 조직의 조직도를 예시한다. 도 8(a)의 것은 도 2(a)~(d)의 사문직 조직에 있어서, 사문선을 화살형으로 배열하여변화시키는 것에 의해 산길 사문으로 형성한 것이다.



3) 선행발명 3(갑 제7호증)은 일본 G사의 카탈로그에 게재된 '금속망'이라는 명칭의 발명이고. 선행발명 4(갑 제8호증)는 2013. 1. 3. 공개된 공개특허공보 제 10-2013-0000467호에 게재된 '고정식 방범 방충망'이라는 명칭의 발명이며, 선행발명 5 (갑 제9호증)는 2002. 9. 5. 공개된 등록실용신안공보 제20-0287511호에 게재된 '고층아 파트 어린이 추락사고 예방용 방범 방충망구조'라는 명칭의 발명이고, 선행발명 6(갑 제 10호증)은 2011. 1. 10. 공개된 공개실용신안공보 제20-2011-0000265호에 게재된 '금속 망을 이용한 방범창'이라는 명칭의 발명이며, 선행발명 7(갑 제11호증)은 2006. 10. 27. 공개된 등록실안신안공보 제20-0429752호에 게재된 '방범방충망'이라는 명칭의 발명이 고. 선행발명 8(갑12호증)은 2001. 3. 15. 공개된 등록실용신안공보 제20-0216456호에 게재된 '복합기능창'이라는 명칭의 발명이다. 다만 해당 선행발명들은 이 사건 특허발명 과 대비되지 않으므로, 주요 내용과 도면의 기재를 생략한다.

####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20. 3 31. 특허심판원에 원고들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선행발명 1, 2 또는 선행발명 1, 2에 선행발명 3에서 8 중 어느 하나를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 2) 원고들은 2020. 11. 16. 해당 무효심판 절차에서 이 사건 제1, 2항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앞서 본 1.가.4)나)항과 같이 정정하는 정정청구(이하 '이 사건 정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 3) 특허심판원은 피고의 무효심판청구를 2020당1042호로 심리한 다음, 2021. 11. 18. "이 사건 정정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 제1, 2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에 의해 이 사건 제3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과 2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라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4, 6에서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2. 당사자의 주장

## 가. 원고들

- 1) 이 사건 정정청구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종래기술이 가지지 못하는 특유한 기능을 부가함으로써 청구범위를 감축한 것으로 정정요건을 충족하므로 적법하다.
- 2) 선행발명 1은 이 사건 카탈로그로 공개된 것인데, 이 사건 카탈로그 중 선행발명 1과 관련된 부분은 이 사건 정정발명의 출원일 이후 공개된 것이므로, 선행발명 1은 이 사건 정정발명의 진보성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이 사건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1을 제외한 나머지 선행발명들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 3)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 나. 피고

1) 이 사건 정정청구는 이 사건 제1, 2항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에 의해 당연히 나타나는 효과를 기재한 것에 지나지 않아서 정정요건을 규정하는 특허법 제136 조 제1항 각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

- 2) 이 사건 카탈로그의 선행발명 1과 관련된 내용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출원 전에 공개된 것이므로, 선행발명 1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 2, 3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
  - 3) 따라서 이와 결론이 같은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 3.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 가. 이 사건 정정청구의 적법 여부

- 1) 특허법 제133조의2 제1항은 "제133조 제1항에 따른 심판의 피청구인은 제13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7조 제1항 또는 제159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지정된 기간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6조 제1항은 제1호로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를, 제2호로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를, 제3호로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2) 이 사건 정정청구는 이 사건 제1, 2항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금속재 방범망은 도 구로 가로 금속사 및 세로 금속사로 직조한 망체를 찌르고 긋는 경우에 도구로 긋는 방 향과 불일치하는 방향으로 응력이 분포되어 도구의 진행방향이 꺾이게 함'이라는 기재를 추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다음과 같은 기재가 있다.

【0007】방범망의 응력이 불균일하게 분포되도록 함으로써, 어느 한 부분에 날카롭고 강한 재질의 도검 등의 도구를 강한 힘으로 밀어 넣고 한도를 초과하는 강한 힘으로 밀더라도 미는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도구가 진행되도록 함으로서 도구가 구부러지거나 여러 가의 강선이 밀려나도록 함으로써 절단됨을 방지하도록 한 변화능직을 이용한 금속제 방범망을 제공함에 있다.

【0008】본 발명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로 금속사와 세로 금속사를 이용하여 직조하되, 두올 이상 건너 교차되도록 함으로써 조직점이 사선방향으로 되도록 함과 동시에 일정 간격으로 조직점의 사선 방향이 변화되어 외력에 대한 응력 방향이 상이하게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다.

【0009】본 발명에 의하여 직조된 변화능직을 이용한 금속재 방범망은 도검 등으로 금속 망체를 찌르고 긋는 경우에 변화 능직에 의하여 긋는 방향과 불일치하는 사선 방향으로 응력이 분포되어 도검의 진행방향이 꺾이게 되고, 이에 따라 도검에 의한 절단 부위의 크기를 최소화하고 응력 발생방향이 도검의 진행 방향과 상이하여 도검의 날이 휘게 하거나 부러뜨릴 수 있게 되어 침입시도를 저지하고 금속망체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3) 해당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해당 정정사항은 금속망의 세로 금속사와 가로 금속사를 두올 이상 건너 교차하여 조직점을 사선방향으로 직조함으로써 나타나는 작용효과 또는 기능 그 자체임을 알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정정청구는 정정 전 이미 이 사건 제1, 2항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금속사의 직조 구성에 의해 나타나는 작용효과 또는 그구성에 내재된 기능을 다시 기재한 것에 지나지 않고, 이는 특허법 제136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정정요건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정정청구는 부적법하다.

####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 1) 선행발명 1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출원 전에 공지되었는지에 관한 판단

선행발명 1이 담긴 이 사건 카탈로그에 발행일에 관한 직접적인 기재는 없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8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선행발명 1을 비롯한 이 사건 카탈로그의 내용은 모두 2002년 가을경이나, 최소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인 2011. 8. 19. 전에는 배포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선행발명 1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가) H의 주소는 2010. 7. 9. "I시 J K공단 L"에서 "I시 M N빌딩 5층"으로 변경되었는데, 이 사건 카탈로그에 H의 주소는 2010. 7. 9.자 변경 전 주소인 "I시 J K공단 L"로 기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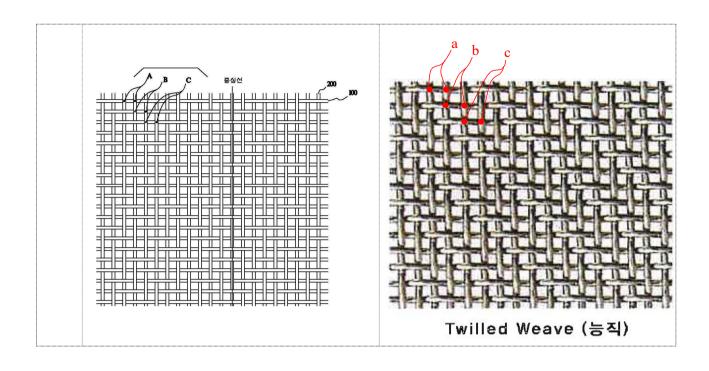
나) 이 사건 카탈로그에는 "CEO Message/인사말" 하단에 인사말 작성 시기와 관련하여 "2002년 가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카탈로그의 "Brief History/연혁"란에도 회사의 설립일로부터 2002년까지의 기록만 있을 뿐 그 이후의 기록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회사의 발전상과 제품의 우수성을 소개하고자 발행하는 카탈로그에 대표자의 인사말과 회사의 연혁을 거의 10년 가까이 갱신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 2)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

# 가) 선행발명 1과 대비

구성 요소	이 사건 1항 특허발명	선행발명 1
1-1	가로 금속사와 세로 금속사를 직각으로 엇갈려 교차시켜 직조하여서 된 금속재 방범망	스테인리스 스틸, 니켈 합금 또는 구리 합 금을 원재료 <sup>2)</sup> 로 하는 금속재의 횡선과 종 선을 수직으로 엇갈려 교차시켜 직조하여 서 된 금속망
1-2	가로 금속사와 세로 금속사가 교차하는 간격을 두올 이상 건너 상, 하로 교차되도 록 하는 조직점이 형성되도록 직조하여 조직점이 사선 방향으로 배열되도록 하여 서 됨을 특징으로 하는 변화능직을 이용 한 금속재 방범망	금속재의 횡선과 종선이 교차하는 간격을 2가닥씩으로 하여 상, 하로 교차되도록 직 조하여 된 능직을 이용한 금속망

<sup>2)</sup> 이 사건 카탈로그 12, 13, 14면에는 망을 구성하는 원재료가 명시되어 있다.



## 나) 공통점과 차이점

- (1)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1-1과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능직)은 가로 금속사와 세로 금속사(금속재의 횡선과 종선)를 직각(수직)으로 엇갈려 교차시켜 직조하는 금속망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 (2)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1-2는 가로 금속사와 세로 금속사가 두을 간격으로 교차하여 조직점을 형성하도록 직조하여 조직점이 사선 방향으로 배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변화능직을 포함하는 구성인데, 선행발명 1에는 금속망의 직조구조가 문언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능직을 보여주는 사진 영상에는 위와 같은 금속사의 직조 구조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 (3) 다만,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금속재 방범망으로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데비해, 선행발명 1은 금속망의 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다는 점(이하 '차이점'이라한다)에 차이가 있다.

## 다) 차이점 검토

차이점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이 금속망의 용도를 방범망으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 선행발명 1에는 금속망의 용도가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런데 금속망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특허출원 당시 방범망으로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었으므로(갑 제8에서 제12호증 참조),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에서 한정한 방범망이라는 용도가 금속망이 갖는 특정한 용도의 새로운 발견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금속제 방범망에서 유리한 효과를 가지는 '가로 금속사와 세로 금속사가 교차하는 간격을 두올 이상 건너 상, 하로 교차되도록 하는 조직점이 형성되도록 직조하여조직점이 사선 방향으로 배열되도록 하는 구조'가 선행발명 1에 그대로 나타나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의 금속망을 방범망으로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 라) 검토 결과의 정리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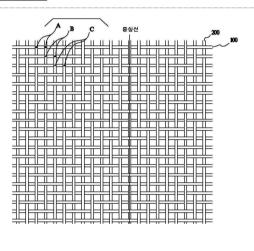
## 3) 이 사건 제2항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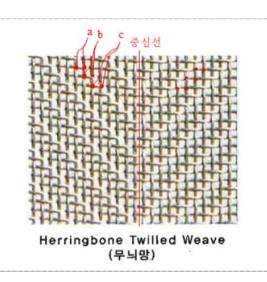
#### 가) 선행발명 1과 대비

구성 요소	이 사건 제2항 특허발명	선행발명 1
2-1		스테인리스 스틸, 니켈 합금 또는 구리 합금을 원재료로 하는 금속재의 횡선과 종선을 수직으로 엇갈려 교차시켜 직조하여서 된 금속망
2-2	가로 금속사와 세로 금속사가 교차하는 간격을 두올 이상 건너 상, 하로 교차되도 록 하는 조직점이 사선상으로 형성되도록	

설정한 폭으로 직조함과 아울러 재차 설정한 폭으로 되도록 가로 금속사와 세로 금속사를 두올 이상 건너 상, 하로 교차되도록 하는 조직점을 형성하되 상기 설정한 폭으로 기 직조된 조직점들과 중심선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는 사선상으로 되도록 직조함

목이 빗살무늬 모양으로 형성되도록 직조 하여 된 헤링본 능직의 금속망





# 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검토

이 사건 제2항 특허발명은 형식적으로는 독립항이나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에 '재차 설정한 폭으로 되도록 가로 금속사와 세로 금속사를 두올 이상건너 상, 하로 교차되도록 하는 조직점을 형성하되 상기 설정한 폭으로 기 직조된 조직점들과 중심선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는 사선상으로 되도록 직조'라는 구성만을 추가한 것이다.

그런데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무늬망)에 금속망의 직조구조가 문언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무늬망을 보여주는 사진 영상에는 앞서 본 이 사건 제2항 특허발명의 추가 구성과 같은 직조 구조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2항 발명은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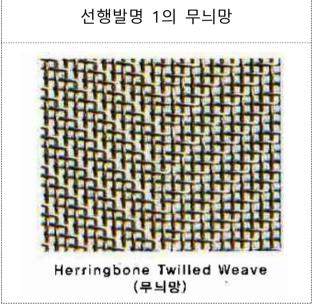
### 4) 이 사건 제3항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

가) 이 사건 제3항 특허발명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이 종속항 발명으로서,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조직점이 '사선으로 배치되는 설정한 폭의 조직점이 다른 설정한 폭의 조직점들과 중심선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도록 주기적으로 연속 변화하여 산형'으로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사건 제3항 특허발명과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은 사선으로 배치되는 설정한

폭의 조직점이 다른 설정한 폭의 조직점들과 중심선을 기준으로 대치되어 산형을 이룬다 는 점에서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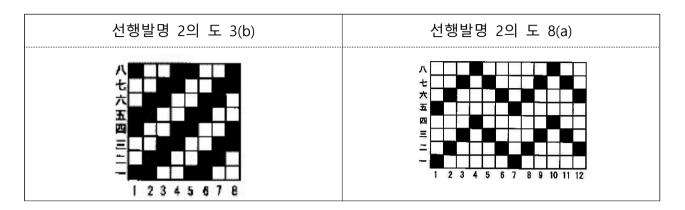
다만, 이 사건 제3항 특허발명은 산형이 주기적으로 형성되는 반면 선행발명 1에는 금속망의 일부만 나타나 있어 이 사건제3항 특허발명과 같이 산형이 주기적으로형성되는지 알 수 없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그런데 선행발명 1의 산형의 패턴을 그대로 반복하기만 하면 산형이 주기적으로 연속하여 형성되므로, 해당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극복할 수 있다.

나) 더욱이 선행발명 2에는 횡사와 종사가 교차하는 간격을 두올 이상 건너 상, 하로 교차되도록 하되 사선 방향으로 배열되도록 직조한 형상(식별번호 [0012], 아래 도 3(b) 참조)과 주기적으로 연속 변화하는 산길사문으로 직조한 형상 역시 나타나 있으므로 (식별번호 [0016], 아래 도 8(a) 참조),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에 나타나 있는 직조형태를 참조하여 선행발명 1의 산형의 패턴을 그대로 반복함으로써 산형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도록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3항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1, 2의 결합으로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 다. 소결론

이 사건 정정청구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특허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등록이무효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결론이 같은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 4. 결론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형근
	판사	임경옥
	판사	윤재필